

2024 지방의원 농지소유현황 분석 결과 보고서

(충남도의원, 천안시/아산시의원)

목 차

- I. 조사배경 및 목적
- II. 조사 대상 및 기준
- III. 분석결과
- IV. 제도개선방안

2024. 04. 28.

천안아산경실련

I. 조사배경 및 목적

- 농지는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임. 따라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 또는 부동산투기, 직불제 부당수령 등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또한 전체 농지 158만ha 중 49%(77.6만ha)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식량 생산기지로 보전하기 위해 타용도 전용을 전면 금지하고, 태양광 설치 등 비농업적 이용을 금지하여야 함.
- 헌법 제121조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위탁경영은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음.
- 농지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주말 체험영농의 경우 1천㎡ (0.1ha, 약 300평), 상속농지는 1만㎡(1ha, 약 3,0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
-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환기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정부와 의회가 솔선수범해야함. 천안아산경실련은 충청남도의회 의원과 천안시와 아산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농지소유 실태를 조사하여 시민에게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 정의가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 최근 개정된 농지법에 근거하여 농지취득심사강화, 농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농지위원회 부활 및 기능 강화 등 제도개선이 요구됨.

II. 조사대상 및 기준

1. 조사대상

- 충청남도의회 의원 46명
- 천안시의회 의원 27명, 아산시의회 의원 17명.
- 자료 출처 : 충남도의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24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2024. 03. 28.)을 근거 하였으며, 천안시와 아산시 의원은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2024년도 3월 30일) 공개 자료를 근거로 이전의 매매, 가액 변동 등 고려하여 작성함.

2. 조사기준

- 농지 : 전, 답, 과수원
- 소유 : 본인 및 배우자(부모나 자녀 소유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 거부 할 수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해 본인 및 배우자만 조사 함)

Ⅲ. 분석 결과

1. 충남도의원 농지 소유 현황

- 충남도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46명 중 30명이 농지를 소유하여 의원수 대비 65.2%를 차지함. 지난해와 비교하여(2023. 3월)와 비교하여 0.6%가 증가한 비율임.
- 농지소유 면적은 145,521.94㎡(14.6ha)이고, 총 가액은 약 126억5,500만원 정도임. 농지소유 의원별 평균 면적은 4,851㎡이며 평균 가액은 약4억2,000만원 정도임. 총면적의 감소 사유는 매매 및 지분 변경에 따른 것이며, **가액 감소는 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른 것임.**
- **지난해와 비교하여(2023. 3월), 면적은 11,089㎡ 감소하고 가액은 약2억 5,9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남.**

<표1> 충남도의회 의원 전체 농지소유현황(2024.03)

년도	의원수* (명)	소유자 수		총면적 (㎡)	가액 (천원)	소유 의원별 평균	
		인원 (명)	비율 (%)			면적 (㎡)	가액 (천원)
2023.3.	48	31	64.6	156,611.01 (15.7ha)	12,914,792	5,051.91	416,606
2024.3.	46	30	65.2	145,521.94 (14.6ha)	12,655,818	4,851.00	421,860
비교	▽2	▽1	▲0.6	▽11,089.07	▽258,974	▽200.91	▲5,255

*주) 재산등록기준일 2023.12.31. 재산공개일자 2024.3.28.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공개 현황 참고.

- 소속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33명 중 24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72.7%의 비율을 차지하고, 더불어민주당소속 의원 10명 중 50.0%인 5명이 소유하고 있으며, 무소속도 1명 포함되어 있음.
-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소유 면적은 약 129,945㎡(13ha)이며 가액은 약 120

억4,000만원 정도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면적은 15,078㎡(1.5ha)이며 가액은 약 5억6,500만원으로 나타남.

-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소유 면적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에 비하여 면적은 약 9배 정도 많고, 가액은 21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음.

<표2> 충남도의회 의원 정당별 농지소유현황(2024.03.현재)

정당별		소유자수		면적 (㎡)	가액 (천원)	소유의원별 평균	
정당	의석수 (명)	인원 (명)	비율 (%)			면적 (㎡)	가액 (천원)
국민의힘	33	24	72.7	129,944.94	12,048,935	5,414	502,039
더불어민주당	10	5	50.0	15,078.00	569,508	3,016	113,902
무소속	3	1	33.3	499.00	37,375	499	37,375
계	46	30	65.2	145,521.94	12,655,818	4,851	421,861

- 의원별 농지 소유 현황을 가액 순으로 보면, 김옥수(서산, 국민), 박정수(천안, 국민), 이철수(당진, 국민), 김응규(아산, 국민), 이완식(당진, 국민)의 주요순으로 나타남.

- 의원별 농지 소유 현황을 가액순으로 보면, 김옥수(서산, 국민), 김응규(아산, 국민), 박정수(천안, 국민), 이철수(당진, 국민), 양경모(천안, 국민)의 주요 순으로 나타남.

<표3> 의원별 농지 소유 현황 상위 5위(가액기준)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면적(㎡)	가액(천원)
김옥수	서산시	국민의힘	16,886.00	1,823,831
김응규	아산시	국민의힘	7,521.34	1,185,371
박정수	천안시	국민의힘	7,555.00	1,050,490
이철수	당진시	국민의힘	7,548.20	1,043,261
양경모	천안시	국민의힘	1,307.00	796,900

- 선거구별로 농지소유 현황을 보면, 공주시(2명), 보령시(2명), 당진시(2명),

금산군(2명), 태안군(2명) 선거구는 100.0%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반면에 계룡시, 청양군 선거구 의원은 농지 소유 실적이 없었음.

<표4> 선거구별 농지 소유 현황(2024. 03.현재)

선거구	의원수(명)	소유자 수		총면적(㎡)	가액(천원)
		인원(명)	비율(%)		
전체	46	30	65.2	145,521.94	12,644,818
천안시	11	7	63.6	20,756.00	2,523,317
공주시	2	2	100.0	9,590.80	785,743
보령시	2	2	100.0	3,980.10	74,477
아산시	6	2	33.3	11,433.34	1,246,673
서산시	3	1	33.3	16,886.00	1,823,831
논산시	2	1	50.0	4,836.00	439,566
계룡시	1	0	0.0	0	0
당진시	2	2	100.0	19,341.20	1,797,345
금산군	2	2	100.0	15,253.00	931,251
부여군	2	1	50.0	1,081.00	63,296
서천군	2	2	100.0	7,199.50	133,879
청양군	0	0	0.0	0	0
홍성군	2	1	50.0	9,056.00	616,224
예산군	2	1	50.0	4,844.00	634,969
태안군	2	2	100.0	6,794.00	155,856
비례대표	5	4	80.0	14,471.00	1,429,391

2. 아산시의회 의원 농지소유 현황

- 전체 공개 대상자 17명의 아산시의원 중 9명이 농지를 소유하여 53.0%의 비율로서, 의원 절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조사됨. 보유율은 전년도와 동일함.
- 아산시의원의 농지소유면적은 약 27,002㎡(2.7ha)이고, 총가액은 21억3,600만원 정도임. 농지 소유 의원별 평균 면적은 약 3,002㎡이며 평균가액은 2억3,700만원 정도임.
- **지난해와 비교하여(2023년) 면적은 약 140㎡ 감소, 가액은 약 1,100만원 감소한 것임. 가액 감소의 원인은 공시지가조정에 따른 것임.**

<표5> 아산시의회 의원 전체 농지소유현황(2024.3.현재)

년도	의원수 (명)	소유자 수		총면적 (㎡)	가액(천원)	소유 의원별 평균	
		인원 (명)	비율 (%)			면적(㎡)	가액(천원)
2023	17	9	53.0	28,321 (2.8ha)	2,238,862	3,147	248,762
2024	17	9	53.0	27,022 (2.7ha)	2,136,237	3,002	237,360
비교	-	-	-	▽1,299	▽102,625	▽145	▽11,402

- 정당별로 농지소유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의 44.4%인 4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9,201㎡이며 가액은 약 7억5,700만원이고, 국민의힘소속 의원은 의석수의 55.6%인 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면적은 약 17,821㎡으로 가액은 약 13억9,000만원으로 나타남.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농지소유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보다 면적은 1.7배의 수준이고, 가액은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음.**

<표6> 아산시의회 정당별 농지소유현황(2024.3현재)

정당별		소유자수		가액(천원)	면적 (m ² /평)
정당	의석수	인원	비율		
더불어민주당	9	4	44.4%	756,865	9,201(2,783)
국민의힘당	8	5	55.6%	1,393,551	17,821(5,391)
계	17	9	53.0%	2,136,237	27,022(8,174)

3. 천안시의회 의원 농지소유 현황

- 전체 공개 대상자 26명의 천안시의원 중 10명이 농지를 소유하여 38.0%의 비율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조사됨, 지난해 비교하여 의원별 소유 비율은 3.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천안시의회 의원의 농지소유면적은 21,410㎡ (2.2ha)이고, 총 가액은 24억 7,000만원 정도임. 농지 소유 의원별 평균 면적은 약 2,140㎡이며 평균가액은 2억2,400만원 정도임.
- 전년도에 비해 면적은 약 1,431㎡ 줄고, 가액은 약 1,3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감소 이유는 의원사퇴요인과 공시지가 조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표7> 천안시의회 의원 전체 농지소유현황(2024.3월 현재)

년도	의원수 (명)	소유자 수		총면적(㎡)	가액(천원)	소유 의원별 평균	
		인원 (명)	비율 (%)			면적(㎡)	가액(천원)
2023	27	11	41.0	22,841 (2.3ha)	2,481,370	2,076	225,579
2024	26	10	38.0	21,410 (2.2ha)	2,467,512	2,141	224,319
비교	▽1	▽1	▽3.0	▽1,431	▽13,858	▲65	▽1,260

- 정당별로 농지소유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의 33.3%인 4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2,571㎡이며 가액은 약 2억2,100만원이고, 국민의힘은 의석수의 42.9%인 6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면적은 약 18,838㎡으로 가액은 약 22억3,600만원으로 나타남. 국민의힘 소속의원이 소유한 농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농지소유보다 면적은 7배 많고, 가액은 10배 정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음.

<표8> 천안시의회 정당별 농지소유현황(2024.3월 현재)

정당별		소유자수		가액(천원)	면적 (m ² /평)
정당	의석수	인원	비율		
국민의힘	14	6	42.9%	2,236,923	18,839(5,698)
더불어민주당	12	4	33.3%	230,589	2,571(778)
계	26	10	38.5%	2,467,512	21,410(6,477)

IV. 제도 개선 방안

1. 농지제도 개선 방안

-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금지’ 하도록 하는 농지제도가 더욱 엄격히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식량창고이자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농지전용을 전면 금지하고, 비농업적 사용을 금지하도록 더욱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농지 취득 자격 심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 복원하거나 기능을 강화하고 투기 우려지역 농지취득, 관외 거주자의 농지 신규 취득, 농지 쪼개기 매입 취득,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 등 농지취득 자격을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신규취득 농지 등 투기 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이용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주말 및 체험농장을 위한 농지소유는 임대차나 사용대차만으로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농지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

2. 지방의원의 농지정책 배제 원칙

- 농지 투기 의혹이 있는 지방의원은 관련 위원회의 배제 및 농지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 지방의원의 농지 소유 경위와 이용계획을 명시하도록 관련 법규에 규정해야 한다.